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974

발의연월일: 2024. 10. 28.

발 의 자: 박수민 · 인요한 · 송언석

박준태・박성훈・박정훈

김선교 • 김소희 • 이인선

김상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미공제금액"이라 함)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경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미공제금액에 대하여는 기존의 이월공제 외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환급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의 미공제금액에 대한 환급 특

례를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 예외에 미공제금액 환급 특례를 적용받 은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제4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수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4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3제4항제4호 중 "세액공제를 받은 후"를 "세액공제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4조의2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		
고가산세) ① ~ ③ (생 략)	고가산세)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4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			
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			
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4		
에 따라 <u>세액공제를 받은 후</u>	세액공제를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	<u>같은 법 제144조의2에 따라</u>		
한 사유로 해당 세액공제 요	미공제금액을 환급받은 후		
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			
우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